

천원, 읍면 경로당 지원 10,000천원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므로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

- 노인복지기금을 농협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나, 기금의 증식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금리가 높은 금고(은행)에 예치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2005년 지출계획중 노인의 날 행사지원 내역은?
- 답 :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교통비 지원, 참석자 기념품 구입, 행사진행비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.
- 문 : 2005년 읍면 경로당 지원내역은?
- 답 : 14개읍면 노인취미교실 강사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4. 12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